

기계항공산업신뢰성기술연구센터 규정

개정 기록표

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	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
1			16		
2			17		
3			18		
4			19		
5			20		
6			21		
7			22		
8			23		
9			24		
10			25		
11			26		
12			27		
13			28		
14			29		
15			30		

기계항공산업신뢰성기술연구센터 규정

제 1 장 총 칙

제1조 (명칭과 소재지) 이 연구센터는 한국항공대학교 부설 기계항공산업신뢰성기술연구센터 (이하 “본 연구센터”라고 함)라 칭하고, 한국항공대학교 (이하 본 대학교라 함)내에 둔다. 연구소의 영문 명칭은 Center for Reliability Engineering in Mechanical and Aerospace Industry (이하 약칭 “CREMA”라고 함)이다.

제2조 (목적) 본 연구센터는 민수 및 군수 분야의 무인기 기술을 연구하여 국가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 (사업)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기계항공산업의 전주기적 신뢰성 프로세스에 관한 신뢰성 원천기술 연구
2. 기계항공산업의 신뢰성 원천기술 관련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
3. 국내 기계항공 관련 제조업체의 신뢰성기술 자문 및 산학협동 연구
4. 국내 기계항공 관련 인력 대상 고급 신뢰성기술 특화교육
5. 기계항공산업의 신뢰성인증 기술 기반 구축
6. 신뢰성기술 관련 국제협력 업무
7. 연구발표 및 강연회 개최
8. 기타 연구소에 필요한 사업

제 2 장 조 직

제4조 (조직) 본 연구센터는 신뢰성기술 연구부, 교육지원부, 산학협력부, 국제협력부를 둔다.

제5조 (임원 및 임무) 본 연구 센터는 연구 기획 및 계획 수립, 운영을 위해 센터장 1인, 부센터장 1인, 임명직 운영위원 그리고 감사 1인으로 구성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.

- ① 센터장 및 부센터장은 본 대학교 공과대학에 재직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다수결에 의거하여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한다.
- ② 센터장이 부센터장을 임명하며 부센터장은 행정 업무를 담당한다.
- ③ 감사는 전임 센터장으로 두며 회계 연도 말에 본 연구센터의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.

제6조 (연구원) 본 연구센터에는 연구위원, 초빙연구위원, 연구원, 보조연구원을 두고 필요시 센터장이 위촉한다.

- ① 연구위원은 전임교수 혹은 명예교수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한다.

- ② 초빙연구위원은 전임강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교외인사 또는 관련 산업체에서 추천받은 자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한다.
- ③ 연구원은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 중 센터장이 임명한다.
- ④ 보조연구원은 고졸 이상의 학력소지자 중 센터장이 임명한다.

제7조 (운영위원회)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고 함)를 둔다.

- ① 위원회는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센터장과 감사를 당연직으로 하며 그 외 연구위원 중 센터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- ② 위원장은 회무를 정리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- ③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사업계획, 예산 및 결산
 - 2. 규정의 제정과 개폐
 - 3. 사업과제의 선정과 평가
 - 4.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
-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8조 (임기) 센터장, 부센터장, 임명직 운영위원들의 임기는 각 2년으로 한다.

제9조 (자문위원) 센터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, 자문위원은 대학교원, 관련 연구기관 및 산업체 인사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.

제 3 장 재 정

제10조 (재정) 본 연구센터의 재정은 자체 수입금, 대학에서 책정한 연구센터 예산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제11조 (회계년도) 본 연구센터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 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12조 (연구비지급 및 관리) 연구비 운영 및 관리 규정은 대학의 규정에 따르며 기타 세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제13조 (규정준용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.

제 4 장 기 타

제 14 조 (운영세칙)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

로 정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.